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712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04월 25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 613호)과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0호)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 4월 25일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생활체육포털 운영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정보 접근성 강화를 조례에 명시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서울시의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등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홍보에 관한 운영 지원을 명시함(안 제16조제8호 신설).
- 서울시 장애인 선수가 대회 출전 시, 장애인 선수의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1호의2 신설).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의 제공을 규정함(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
-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 및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다양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의2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5의2.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내 학교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 7. (생 략)</p> <p><u><신 설></u></p> <p>8. (생 략)</p> <p>제1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의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p> <p>1. (생 략)</p> <p><u><신 설></u></p>	<p>제16조(생활체육의 진흥) ----- -----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관내 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보조 인력 지원</u></p>

2. ~ 5. (생략)

<신설>

6. ~ 11. (생략)

<신설>

제18조(지원) ① ~ ④ (생략)

<신설>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라.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2. ~ 5. (현행과 같음)

5의2.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 11.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
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
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 활
성화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
되는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의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내 학교의 다
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